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8.

발 의 자 : 이강일 · 강준현 · 김남근
김남희 · 김현정 · 민병덕
맹성규 · 박상혁 · 박홍배
이상식 · 이용우 · 임미애
천준호 · 허 영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·목적·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,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,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

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).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수사기관은 제18조 제2항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
2.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
3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및 그 처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
③ 그 밖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공공기관의 장이”를 “공공기관의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·규모,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공기관의

장”을 “개인정보처리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공개할 수 있다”를 “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국가 안전, 외교상 비밀,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2.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 및 감호의 집행, 교정처분, 보호처분,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3.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4.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
5.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

제37조제1항 후단 중 “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”을 “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등록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수사기관은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</u> <u>1.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</u> <u>2.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</u> <u>3.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</u> <u>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</u> <u>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및 그 처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</u> <u>③ 그 밖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 ① <u>공공기관의 장이</u> 개	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 ① <u>공공기관의 장 및 처</u>

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~ 7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 안전, 외교상 비밀,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
2.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 및 감호의 집행, 교정처분, 보호처분,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

3. 「조세법처벌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

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·규모,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
파일

4.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
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
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
일

5.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
류된 개인정보파일

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
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
록여부와 그 내용을 검토하여
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
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
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
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
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
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
수 있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③ -----

----개인정보처리자-----
-----.

④ -----제1항-----

-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그 사
유를 명시하고 전부 또는 일부
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국가 안전, 외교상 비밀, 그
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
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
보파일

<u><신 설></u>	2. <u>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 및 감호의 집행, 교정처분, 보호처분,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</u>
<u><신 설></u>	3. 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<u>범칙행위 조사 및 「관세법」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</u>
<u><신 설></u>	4. <u>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</u>
<u><신 설></u>	5. <u>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</u>
⑤·⑥ (생 략)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</u>	⑤·⑥ (현행과 같음)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등록-

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 ② ~ ⑥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